

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(받을어음 수탁관리용)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품의완료후 즉시

2. 개정내용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제 1 조 ~ 제 11 조 (내용생략)</p> <p>제 12 조 (약정기간)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한다. 그러나 약정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1 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제 13 조 ~ 제 17 조 (내용생략)</p>	<p>제 1 조 ~ 제 11 조 (좌 동)</p> <p>제 12 조 (약정기간)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<u>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</u> 은행”은 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“회사”에 통지한다 ②제①항의 통지에는 “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다. ③” 회사”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“연장을 원하지 않음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.</p> <p>제 13 조 ~ 제 17 조 (좌 동)</p>	<p>금융감독원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